

유럽 공공연구기관의 지적소유권 관리현황

I. 독일

1. 정부자금에 의한 연구개발의 형태

독일에서의 정부소유특허란 예외적인 경우이다. 왜냐하면 보통, 특허를 소유하는 것은 그 특허발명에 투자한 개인 또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이다(연구개발전체의 약 80%를 산업계가 투자하고 있으며, 자기투자비율이 기술주도형 산업에서 가장 높고, 대개 공공자금이 주를 이루는 항공우주산업부문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연방(bund) 또는 연방주(lander))가 연구개발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성과인 발명, 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의 3가지 경우이다.

(1) 정부조달을 위한 연구개발

정부는 첨단기술제품을 조달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산업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국방부, 우정·전기통신국, 연방철도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만 대형과학기구나 우주개발에 관하여 연방교육연구기술부가 개발을 위

탁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 공립연구기관에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는 희박하며, 공영기업에 대한 개발위탁은 일반기업에 대한 연구위탁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다.

(2) 연방교육연구기술부에 의한 산업계로의 연구원조

연방 교육연구기술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 = BMFT)는 스스로 책정한 기술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산업계에 의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프로그램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 하나의 형태로서, 연방교육연구기술부는 기술의 개발보다 신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첨단기술부문에서는 혁신적 프로젝트라면 그 프로젝트의 장점을 사전에 심사하지 않고 조성금을 교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성금은 특정한 결과를 바라는 성질도 아니며, 정부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도 아니고 많은 발명을 이룩하는 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방교육연구기술부 프로그램의 대

* 본 자료는 JETRO 기술정보, 1995년 7,8월호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 정리한 것이다

부분은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업계가 스스로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첨단기술」의 조사와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자금원조액은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프로젝트 비용의 40%에서 100%까지 줄 수 있지만, 100%의 원조는 예외적이다. 이러한 기술프로그램은 정치경제 레벨에서 책정되어 정부의 예산조치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다른 법적기초는 특별히 없다. 자금원조는 행정규칙에 기초를 두고 정해진 諸 규 칙 (Nebenbestimmungen fuer Zuwendungen auf Kostenbasis des Bundesministers fuer Forschung und Technologie an Uternehmen der gewerblichen Wirtschaft fuer Forschungs und Entwicklungsvorhaben, Oktober 1988 - NKFT 88)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칙은 관계업계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에 작성된 것으로, 원조를 받는 자가 개별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칙은 민간기업이 원조대상 연구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나,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모두에 적용된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連邦州도 몇 군데 있다. 이러한 자금원조는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대규모인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대상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연방주는 주로 중소기업이 기존의 기술을 신규 도입하려는 경우에 몇가지의 자금을 원조하고 있다(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재정적 원조, 전문적인 컨설팅의 이용에 대한 재정적 원조 등).

(3)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원조

연방정부와 연방주는 매년의 예산으로 정부 및 주의 연구기관의 운전자금(용지, 투자, 직원)에 재정적 원조를 하고 있다. 연구기관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타입이 있다.

첫째로, 대학과 그 관련 기관과 같은 학술적인 교육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연방주 조직의 일환이지만, 독립운영체로서 州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다.

둘째로, 연방정부와 연방주는 공동으로 다수의 독립공공연구기관(Max-Planck-Gesellschaft, Fraunhofer-Gesellschaft 의 각 연구소 등)에 자금을 원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이나 협회는 스스로 실시하는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단히 넓은 의미에서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州가 자금원조를 이유로 간접적으로 연구개발 방침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다 하여도, 이들 기관은 실시하는 연구개발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기관 중에는 주의 자금원조가 필요자금의 일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금(기부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연구계약 - Fraunhofer - Gesellschaft 등이 그 예)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관도 있다.

셋째로, 연방정부와 연방주는 산업에 관련되는 특정기술분야(핵물리학, 정보기술, 항공기·우주공학, 환경보호기술, 초대형 과학기기의 제작기술 등)에서, 기술의 개척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정된 수의 대규모 연구소(Grossforschungseinrichtungen, GFE)에 공동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소위 대규모연구소는 산업계로의 기술이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을 활동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 이외는 독립 및 자치를 누리고 있다. 이들 기관은 대부

분의 경우(전문적으로 공공용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私的 法主體(민간단체)로서 조직되어 있지만 지적재산 관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칙(GFE법(대규모연구소법)의 Anlage A)에 따르게 되어 있다.

넷째로, 특정한 시험검정(위생관리, 기술규격 등)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 또는 연방주 관할 연구소도 있다. 이들 연구소는 일반적으로 공립조직의 형태를 취하며, 행정의 운영규칙에 직접 따르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연방정부와 연방주는 대학등 교육시설의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독립연구기관에 대한 기초자금의 원조와 더불어, 개별적인 연구프로젝트에 재정적인 원조를 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추가원조를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와 연방주는 독일연구협회에서 이러한 제도를 兩者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同협회는 개별 프로젝트의 장점을 심사한 후에, 일상 연구비 뿐 아니라 특수한 연구프로젝트에 필요한 특별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원조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교육연구기술부(및 어느 정도는 州도)는 대학 등, 교육시설의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독립연구기관의 연구프로젝트 중, 자체의 기술프로그램(산업면에서의 가능성을 가진 기초연구 등)에 합치된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 원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는 산업계에 대한 자금원조와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이 적용되며, 해당 규칙은 연구기관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연구기관이 원조대상 연구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나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

우, 모두에 적용된다.

2. 정부자금 연구개발에 의한 발명의 귀속

(1) 정부조달을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정부가 이러한 종류의 연구개발을 발주한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의 비용+이익(단, 이익을 얻는 곳은 기업 또는 Battelle 나 Fraunhofer Institute 와 같이 계약연구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다. 계약금액은 각각의 계약에 따라 다양하지만, 정부가 연구성과의 이용에 대하여 권리를 요구하는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발주하는 여러 부처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① 첨단기술제품 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개발이 발주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경쟁에 기초를 두고 정부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이 정부조달 이 외에서 이용하여 얻은 수익의 분배를 정부가 받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한 특허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권리를 주장한다. 다시 말해 발명과 특허의 소유권은 기업에게 주지만(이 경우, 해당기업은 특허취득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통의 경우 정부는 계약 하에 이루어진 모든 발명에 대하여 정부조달을 위해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허사용료가 없는 통상실시권을 획득한다. 이와 같은 라이선스 조건은 부처에 따라

다르지만, 국제조달(NATO의 군비조달, 국제 철도나 전기통신 등)의 경우에는 보통 비교적 정부에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어, 정부가 전면 적인 소유권이나 무제한실시권을 요구한 예나, 정부가 연구개발회사의 경쟁회사로부터 연구개발특허를 이용한 조달을 할 때 경쟁타사에 대하여 적당한 라이선스료를 요구하는 권리를 연구개발회사가 획득한 예가 있다.

계약을 수행할 때, 정부직원과 기업직원의 공동으로 발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이지만, 특허취득비용은 이익과 마찬가지로 쌍방에게 분배되어, 정부는 자신의 조달용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기업은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건은 여러 가지이며, 당사자의 한쪽이 특허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다른 쪽 당사자는 특허취득비용을 부담하고 그 특허를 받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수주자는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직원이 한 발명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받거나 또는 특허를 받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정부의 자기사용과 정부조달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유한 후에).

기업이 주로 정부조달품의 납입이 아닌 일반 시장에서 개발특허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은 특허실시료와 마찬가지로 산정방법으로 산출된 사용료를 정부에게 지불함으로써 계약 금액을 정부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② 연방연방교육연구기술부에 있어서의 계약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상황과는 대조적으

로 제품의 조달이 아닌 산업계에서의 기술개발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자금원조는 일반 또는 특별조성금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물품조달목적으로 연구개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예외적(우주개발이나 심해개발 등)이다.

연구개발계약이 실제로 이용되는 경우에, 조건은 연구개발조성금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발명의 권리는 계약수주자에게 귀속되고, 정부는(국제적인 연구개발협력을 포함하여) 정부의 연구개발을 위해 실시권을 보유하고, 계약수주자는 이 발명의 기술적 백그라운드를 포함하여 타 기업에게 라이선스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칙은 연구개발 조성금에 관한 규칙을 거의 답습한 것으로 아래 (2)에서 그것을 설명하였다.

연방연방교육연구기술부의 계약에 의해 원조되는 연구개발에서는 공동발명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방부이나 연방우정부의 경우와는 달리 연방교육연구기술부는 계약수주자와 협력할 수 있는 연구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에 기초를 둔 기업이 독립 연구조직과 협력하기로 되어 경우에는 당사자의 한쪽에게 주어지고 있는 정부원조조건이 공동발명에 대하여 적용된다(아래(3)참조).

(2) 연방교육연구기술부에 의한 산업계로의 연구원조의 경우

연방 연방교육연구기술부가 기업에게 주는 자금원조는 보통 연구개발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커버하는 조성금의 형태를 취하고, 프로젝트 비용의 100%까지를 부담하는 것은 예

외적인 경우이다. 연구개발프로젝트 성과의 이용에 대한 규칙은 원조의 정도에 따라 여러가지이다.

조성금의 목적은 기업의 기술력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연구개발성과와 그에 대한 특허는 기업에게 귀속된다. 기업은 프로젝트에서 얻은 모든 발명에 대하여(발명을 한 직원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自費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부 및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는 것을 기업에게 요구하게 된다.

① 정부규칙(NKFT88, 제13절)에 의하면, 정부는 모든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과(특허가능한 것 또는 가능하지 않는 것 양쪽을 포함)에 대하여 정부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취소불능하고 사용료가 없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과학기술촉진과 자신의 조달을 위해 제3자에게 서브라이센스를 주는 권리를 가진다.

조성금이 연구개발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넘는 경우에 정부는 연구성과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업의 既보유특허권, 저작권 등에 대해서도 취소불능한 통상실시권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실시권은 실시료(해당 기 보유특허권, 저작권 등이 공공자금에 의한 원조를 받아 얻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상장으로부터 산정되는)를 지불한 후에만 주어지며, 또 이들 특허권, 저작권 등을 정부조달을 위해 서브라이센스를 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연방 우정부, 연방철도, 기타 상업적 성격을 가진 공영기업에 의한 조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 특허제품(또는 저작물 등)이 보통의 상업조건으로 시장에서 입수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는

실시되지 않는다.

② 정부규칙(NKFT88, 제14절)에 의하면, 프로젝트 비용의 50% 이하의 조성금을 받고 있는 자는 프로젝트의 연구개발성과인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한 변경 불가능한 통상실시권을 통상의 실시료로 일반의 제3자에게 줄 의무가 있다. 허락하는 실시권은 특허권의 국내실시의 허락에 한정되어 있지만, 특허를 보유하는 기업이 자신의 기본적인 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제품의 수출까지 실시허락되는 것이 가능하다.

조성금이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넘는 경우에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는 의무는 지적재산의 독점권에 의해 보호되는 성과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의 모든 성과, 즉 모든 기술적 노하우에 적용되고, 동시에 프로젝트 성과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까지 부연된다.

위에서 말한 실시허락의 의무는 해당 특허권 등이 통상의 상업상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보통 입수할 수 있는 제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시료는 해당산업에 있어서의 실시료의 상장을 토대로 산정되지만, 동시에 연구개발성과를 이룩하는데 있어 받은 공공자금원조의 정도도 고려된다. 이것은 모든 연구성과의 실시료 산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물론, 개발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본기술·기본특허의 실시료 산정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제3자인 일반기업이 이와 같은 실시허락의 의무로부터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공공자금

원조에 의한 연구개발로부터 생긴 특허에 관한 실시허락의무는 보통 독일 특허청의 특허등록으로 공개된다(NKFT88의 제12 2절).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으로부터 얻은 실시료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정부와 나누지 않으면 안된다(NKFT88 제17조 참조). 유럽경제공동체 이외에 거주하는 기업에 대한 실시허락에 대해서는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NKFT88의 제18. 1절).

조성금을 받는 기업은 실시허락의무의 일반적인 면제, 즉 자기 또는 특정한 실시권자가 연구성과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NKFT88의 제15절).

마지막으로 정부와 개발기업의 공동개발의 경우, 연방교육연구기술부는 연구프로젝트의 실제 수행에 직접 관련하지 않고 또 조사 이외의 형태로는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기술연구부와 기업에 의한 공동발명은 일어나지 않아 그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 프로젝트가 기업 수개사의 공동 또는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공동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간에 공동발명은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발명의 실시는 당사자가 프로젝트에 앞서서 또는 특별히 맺은 상호협정에 따른다.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협정을 맺을 자유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통상 비즈니스상의 배려가 통용하며 협정의 비밀성도 이에 좌우되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규정(NKFT88.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Allgemeine und Besondere Nebenbestimmungen fuer Zunwendungen des Bundesministers fuer Forshung und technologie zur Projektfoe

derung auf Ausgabenbasi - ANBest - P.)에 의해 실시허락의무가 있는 경우는 해당의무는 당사자의 결정에 우선한다.

(3)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원조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의 취급은 그 기관이 가진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다른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① 산업 관련 기술의 대규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 및 연방주의 연간 전체에 산에서 자금원조를 받고 있는 대규모 연구기관은 特別財政法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은 법률(특별재정법 첨부 A)에 의해, 정부 및 산업계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내용은 산업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원조에 있어서의 실시허락의무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반복하지 않지만, 다음의 2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이러한 대규모 연구기관은 대부분 상업법인이라는 형태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私的인 계약에 의해 고용되어 있어 이들 기관 내부에 있어서의 발명에는 從業員發明法이 확실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기업에 있어서의 특허정책과 마찬가지로의 특허정책을 취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모두 기술이전부 또는 산업연락부를 설치하고, 산업견본시장에 발명을 출품하는 등 발명의 상업화를 꾀하는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로, 대규모 연구기관은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과 공동으로 많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계약조건에 따라 많은 기술이 산업계로 이전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 조건은 ㉠당사자가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자금적·기술적 공헌도, ㉡프로젝트의 성과를 이용하여 기업이 제품을 제조하여 얻는 이익, ㉢참가기업 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프로젝트 성과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연구비용을 어느 정도 회수하려는(생산능력을 갖지 않은) 연구조직의 사망 등에 좌우된다. 따라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 도달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 대학 등의 학술적 연구기관은 사정이 다르다. 이러한 기관의 주된 목적은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직접 기술이전이라는 산업계의 리스크로부터는 분리되어 지적재고를 위한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를 하는 것이다. 조직형태는 주의 행정 내부에 있어서의 독립조직으로, 기본적으로 내부의 전문가 집단이다. 이와 같은 기능과 이러한 조직형태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교수와 그의 조수가 하는 학술적인 연구성과는 공표되지 않으면 안되지만(학문적 교육기관제도법), 한편으로 이러한 종류의 연구로부터 생긴 발명에 관한 권리는 발명자에게 독점적으로 소속되는 것이 법률(종업원발명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발명자만이 그 특허를 얻을 권리를 가지며,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 또 특허를 실시할지 아닐지의 자유도 가지고 있다.

위에 말한 것은 보통의 이러한 연구 모두에 대하여 해당되지만, 州로부터 대학에 지불되는 특별임사용자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 연구의

성과이용에 대해서는(특허권이냐 실시권이 아냐) 이익을 대학과 나눌 의무가 있다(종업원발명법). 이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

이러한 발명자 특권은 과학계 대학의 교수나 조수만이 누릴 수 있고, 다른 대학의 직원(연구협력자 등)은 그와 같은 독립성을 가질 수 없지만(그들은 동법 제40조의 대상이다), 한편으로 과학계 대학에 있어서의 객원연구자도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연구 프로젝트로부터 생겨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이 여러 가지가 된다. 그리고 대학특허의 이용은 보통 개개의 연구자의 이니셔티브에 맡기고 있다. 시장에 있어서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연구자가 자신의 발명을 양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결은 없다. 연구자는 특허취득비용이나 발명이용의 원조를 위해 소액의 자금을 빌려주는 Fraunhofer-Gesellschaft의 하부단체인 Patentstelle der Deutschen Forschung에 자문과 원조를 구할 수도 있다.

연구자가 원조를 받아들여 발명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유용하여, 특별한 산업연락부나 기술이전부를 대학 자신이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최근 수 년의 일이다. 이러한 기관의 직무는 예외적인 연구계약의 체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연구 프로젝트 또는 특정한 연구기관에 대한 특별원조를 민간에 대하여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 중에는 기업과의 사이에서 정보·직원을 교환하기 위한 틀을 정한 협정을 맺고 있는 곳도 있다. 산업계와의 관계는(일반적인 패턴에 따른 연구계약은 제외) 특허의 소유권이냐 이용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학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을 유리한 조건으로(전용실시권이냐 특허이전의 경

우에는 특허취득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등) 산업계에 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산업계와의 협력형태는 이와 같이 다양성이 풍부하므로 일률적인 규칙은 없다. 계약의 예는 입수하기 어렵고, 관행의 기준을 나타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산업계는 진행 중인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와 성과를 실시할 권리를, 가능한한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대학의 교수나 연구기관은 기업과 함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다. 공동계약에 의해 얻어진 지적재산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는 성과를 반드시 공표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교섭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종류의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연방 연방교육연구기술부가 EC 위원회의 특별보조금에 의한 원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경우 보조금에 대한 규칙이 대학과 산업계 간의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과학진흥을 위한 Max Planck Society와 응용연구를 위한 Fraunhofer Society 등과 같은 학술 연구기관 이외의 독립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양자 모두 다수의 연구 개발기관을 운영하는 민간의 협회이며, 연구자는 확실히 종업원발명법의 대상이다. 그러나 Max Planck Society는 기초연구에 전념하고 있어, 보다 학술적 분야에 가깝고, 따라서 발명의 귀속과 이용에 대한 그러한 방침은 과학계 대학의 연구자에 있어서의 발명특권과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종합하여 말하면, Max Planck Society는 연구자가 행한 일로부터 생겨난 발명의 모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시장에서의 상업적인 조건으로 가능한한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Max Planck Society가

권리를 주장하는 발명의 이용은 이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관련 상업법인이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상세한 것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전을 위한 법인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종종 전용실시권도 허락되고 있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실시허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Fraunhofer Society는 연간 예산의 적어도 반 정도를 연구개발계약으로부터의 수익에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특허정책을 취하고 있다. Fraunhofer Society가 행한 연구로부터 얻은 특허는 상업적으로 실시 허락되지만, 그러한 특허는 산업계로부터의 연구개발계약의 발주에 유용하다. 이들 연구개발계약은 산업계가 하는 연구계약의 일반적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 정부가 Fraunhofer Society에 연구개발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일반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Fraunhofer Society는 정부로부터 보통 연구조성금은 받지 않고 연구개발계약의 발주를 받고 있다.

④ 대학 등의 학술적인 연구기관 및 기타 독립연구기관은 특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조금을 얻을 수 있다.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게 가장 주요한 보조금 제공자는 독일연구협회이지만, 이 협회는 과학지식 일반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발명의 이용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방 연방교육연구기술부는 보조금 교부시에, 원조한 연구 프로젝트로부터 얻어진 성과의 이용에 대한 조건을 붙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으로 100% 연구자금

을 원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NKFT의 규정과 같은 내용의 규정(AN Best - P의 제10a절과 제11a절)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업계의 기술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에 의한 자금원조는 보통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특별비용(기본적 연구개발기구나 장치, 일반적인 연구개발설비 등의 간접비용은 연구기관이 부담한다)을 모두 커버하고 있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원조한 연구에 의해 얻은 성과 및 그 성과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자 소유의 기존의 특허,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하여 무상의 취소불능, 양도가능한 통상실시권을 요구한다. 단, 기존의 노하우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실시허락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필요성의 유무를 검토한 후에 실시권이 공여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실시권은 공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연구성과 및 기존의 특허, 노하우의 실시권을 받는 자는 그러한 연구성과 및 기존의 특허, 노하우에 대한 양도불능한 통상실시권을 적정한 조건으로 제3자에 대하여 허락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방교육연구기술부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전용실시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실시허락의 내용 및 실시로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실제의 예가 그다지 없다. 실시료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가는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교섭에 맡긴다.

AN Best-P는 모든 발명에 대한 권리를 연구자로부터 취득하여 특허출원할 것을 연구기관에 요구하고 있지만 연구기관은 그것을 수행하는데는 약한 입장에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실시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연구기관에는 교수, 조수 등의 연구자에게 그 발명을 연구기관

에게 양도하는 것을 강압하는 법적권한도 없고, 특허출원비용을 보조하거나 종업원인 발명자에게 발명보상을 하기 위한 자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 산업계의 기업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연방교육연구기술부가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연구성과인 특허권 등의 취급은 공동연구계약이 정한대로 따르기로 되어 있다. 공동연구계약에는 기준이 되는 형식은 없지만, 산업계가 연구개발기관의 직원이 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는지, 특허출원, 등록비용 등 및 종업원에 대한 발명보상금을 부담하고 우선적인 실시권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의 계약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참가기업에 관해서는 NKFT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AN Best-P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여 수입이 얻어진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정부의 자금원조를 반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규칙에는 거의 실효성이 없어, 연구개발기관이 스스로의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 라이선스 수입의 2/3를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정관행이 이 규칙의 적용을 완화하고 있다.

II. 프랑스

1. 정부조달을 위한 연구개발

프랑스에서는 공공단체에 의한 조달활동은 중앙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는 조달계약에 대한 조건

에도 적용된다. 상세히 말하자면,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련의 "지적 서비스에 대한 일반 행정규칙(Cahiers de clauses administratives generales applicables aux prestations intellectuelles(CCAGPI))"이 설정되어 있는데, 계약하에 생긴 지적재산권의 소유권과 이용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한 규칙으로 되어 있다. 계약하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성질이나 계약 연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목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은 상당히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이 사회과학에 관한 독립연구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인 경우에는 연구성과는 정부에 귀속되고, 계약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인 경우에는 그 성과를 이용하는 권리는 정부와 계약수주자에게 분배되도록 하고 있다. 지분비율은 연구개발계약의 목적이 상품·서비스의 공공조달의 준비를 위한 것인가, 그러한 공공조달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연구성과의 소유권은 계약수주자에게 있지만, 정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결과를 사용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권리를 얻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성과의 비사용, ㉡유리한 정부조달을 위한 제3자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 ㉢그 후의 정부조달에 대한 해당계약기업의 참가, ㉣성과가 정부조달 이외에서 이용된 경우의 계약요금의 반환, ㉤특허권 등의 권리를 정부에 양도한 계약수주기업이 받는 실시권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

2. 정부에 의한 산업계로의 연구원조

프랑스는 연구개발이나 기술혁신노력에 대하여 자금원조를 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의 관심은 자국의 산업계가 충분한 양의 연구개발을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그 성과를 시장에 내보내는데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에 관한 프랑스의 정책은 그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지적재산에 대한 이익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고,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이 실제로 이용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정하는 이외에 그 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고 있다.

산업계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원조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다. 첫째로 산업계 또는 정부의 연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노력을 원조하기 위해 국가가 특정한 기술분야에 대하여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에 따라 연간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국유 공영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주거나 또는 개개의 기업에게 특별조성금을 교부함으로써 원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조에 의해 얻어진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조건이 많은 적든 CCAGPI의 규정에 따르거나 개별적으로 교섭되고 있다.

둘째로, 프랑스는 이상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원조 뿐 아니라 개별적인 기술혁신 프로젝트의 장점과 위험을 판단한 후에 자금원조를 줌으로써 산업계 일반의 기술혁신노력을 원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조성」(aide a l'innovation)은 공적인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의 이용에도 관계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연구성과활용국(Anvar)이 관리하고 있다. 원조는 단순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기술혁신에 대하여 미치게 되므로 원조를 받은 프로젝트로부터 생긴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이용은 모두 기업에게 양도된다. Anvar가 실시허락이나 특허권

등 지적재산의 이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 조성을 받은 자가 프로젝트를 인수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태를 상정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다른 기업에게 Anvar가 실시허락을 주거나 지적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Anvar는 조성을 받은 자의 특허취득이나 실시허락활동에 몇 가지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3.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원조

프랑스는 공공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연구개발기관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정부의 내부조직인 대규모 연구기관으로, 과학, 기술, 더 나아가서는 산업, 상업적인 성격을 가진 비교적 독립성이 높은 「공공조직」이다. 그의 활동의 커다란 초점은 불확정한 공업적 잠재력을 추진시키는 장기적 연구이거나 국가의 산업에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연구여야 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지적재산정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은 국가에게 유용하고 산업계의 패턴을 답습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둘째로, 대학 등 지적재고를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술적인 연구기관이 다수 있다. 이러한 기관내 연구자의 발명은 학문적인 특권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종업원)에 의한 발명의 이용에 대한 대학측의 관리가 독일 보다 효율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학술적 기관의 규칙이 이러한 일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대학에게 산업계의 자금을 도입하고 또는 학술적인 연구의 성과를 이용하도록 하여 최근에는 많은 대학에서 산업연락부와 기술이전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 대학은 Anvar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로, 전국과학연구센터(CNRS)는 자기 조직내의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연구기관(대부분은 학술적인 연구기관이다)의 특정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재정적인 원조를 하고 있다. CNRS는 원조와 함께 원조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보호·이용하려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어, 이를 위해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독자적인 발명보상제도를 설정하고 기술이전(valorisation es resultats de la recherche)에 대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CNRS는 컨설팅 업무,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계약, 연구성과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 민간자금을 획득하는데 점점 성공하고 있다. 이들 계약의 상세한 내용(계약조건, 실시료)은 공표되어 있지 않지만, 공공자금으로 연구개발을 원조하고 있기 때문에 CNRS가 무상공여의 방침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실제로 프랑스의 연구기관은 1982년 7월 15일 제정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계획법」에 기초를 두고 가능한한 연구성과의 이용을 피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기관은 Anvar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다. Anvar는 앞에서 말한 정부에 의한 산업계로의 기술혁신조성의 관리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으로 부터 생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피하는 것도 그 기능의 하나이다(원래 Anvar는 공공연구기관의 성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연구성과의 이용만을 그 의무로 하고 있다).

Anvar는 실시권 설정을 중개하는 기술이전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성과를 특허출원·등록하기 위한 비용 및 연구성과가 순수하게 상업적인 조건으로 산업계에 실시허락(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가능한 정도로 기술 개발되기 위한 비용을 어느 정도의 공공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원조하고 있다. 중개료와 해당 개발비용을 반제하고 나면 라이선스 수입은 연구 개발기관에게 모두 들어가게 되어 있다. Anvar는 많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정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이전국을 가진 연구기관과도 계약이 있다. Anvar는 산업계에 대한 기술혁신조성과 연구기관으로부터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의 쌍방을 취급하는 자신의 지방·지역하부조직을 가짐으로써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Ⅲ. 영국

공적인 연구기관이라는 국가제도는 프랑스와 독일과 마찬가지로 복잡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특히 강조하기 때문에 산업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영국의 공적인 자금 원조는 앞의 두 나라 만큼 발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조성금의 법률적인 취급이나 지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에 대해서 최근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곤란하다.

1. 정부조달을 위한 연구개발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간접적으로 추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부조달은 확실히 국방부의 규칙에 따르고 있다. 국방부 규칙의 기술관리방침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계약을 다룰 때에도 이용되고 있다. 국방부의 표준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수주자가 국방부와 계약수행에 의해 발명을 이룬 경우에는 국방부에 바로 보고하고, 보고 후 6주 이내에 국방부가 해당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계약수주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특허출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정부에 의한 산업계에 대한 연구 원조

소수의 기술분야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산업체로의 자금원조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제5세대 컴퓨터의 개발을 위한 Alvey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나, 원조가 주어지고 있는 다른 소수 계획의 뚜렷한 특징은, 원조는 연구기관과 산업계의 기업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계획 하에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연구개발 자체의 가치와 그 성과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업적인 능력에 의해 선발되고 있다. 이러한 계약에 적용되는 상세한 규칙은 일반적으로는 입수할 수 없다.

3.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원조

국가의 공공연구기관은 정부가 운영하며, 주로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조직이거나, 학술적인 연구기관들이다. 그 어느 쪽도 예산에 의해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는

연구로부터 얻은 발명의 이용을 관리할 수 있다. 다수의 공공연구기관이 산업계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학술연구기관은 공공자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그 이외에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상업적 베이스로 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예전에는 공공연구기관이 이룩한 발명의 이용 및 실시는 국가연구개발공사(NRDC)가 맡아서 하였지만, 현재는 연구기관이 독자적인 기술이전그룹 또는 산업연락그룹을 만들고 또 민간의 라이선스 중개업자를 사용하는 등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기관이 NRDC의 조직의 일부를 계승하고 있는 「영국기술그룹」(British Technology Group)의 라이선스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일정한 기술분야를 관할하는 부처에서의 연구회의(Research Council)에 의해 원조를 받는 특별한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위원회가 「영국기술단체」의 이용을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영국기술단체」의 라이선스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朴敬善 編譯)